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채용대상자는 제외)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공항철도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까지의 기간 중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서 발송해 드립니다.

【발송주소】

인천광역시 서해구 검바위로 46, 공항철도(주) 인재혁신실 채용담당자 앞
(우편번호 : 22694)

- 공항철도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까지 채용관련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**【별지 제3호 서식】**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